[모바일] 증권번호:

[필독]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고지사항 이행 확인서

미동의 동의 🗹

본 고지사항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(보험대리점, 보험설계사, 기타 유자격자)가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』 26 조 제 1 항에 따라 판매대리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.

-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명칭과 업무내용 등
  유안타증권이 대리• 중개하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명칭과 업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
- 2. 社(사) 專屬(전속)의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인지 여부 유안타증권은 하나의 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1사 전속의 판매대리·중개업자는 아닙니다.
- 3. 금융상품 판매대리•중개업자 및 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을 위반하여 금융 소 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4.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권한, 보험료 수령 권한 등의 유무 유안타증권은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사실상 중개(주선)하는 역할을 하며, 다음의 각 권한은 없습니다.
  - ①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를 대리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할 권한
  - ② "보험료" 등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한
- 5. 다른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경우 위탁자의 명의, 증표 등 유안타증권은 다른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부터 대리·중개 업무를 위탁받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.
- 6.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정한 수수료 외의 금품 등 요구·수령 금지 유안타증권이 다른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이나, 그 밖의 재산상 이 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- 7. 금융소비자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의 보유 관리 주체 금융소비자에 관한 정보 (개인정보, 신용정보 등) 및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만 보유 관리합니다.
  - ※ 유안타증권은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 28 조에서 정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의무로서 일부의 업무관련 자료만을 위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 및 유지·관리합니다.
- 8.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유안타증권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거나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- 9. 금융상품 판매대리•중개업자의 이력정보 등 확인방법 동 판매인의 업무수행 이력에 관한 정보 등 다음 각 시황은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e-클린보험서비스(http://www.e-cleanins.or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- ① 『보험업법』에 따른 보험설계사 이력(위탁법인 및 그 법인과의 계약기간 포함)
  - ② 『보험업법』에 따른 영업정지•등록취소 과태료 처분과 『보험사사기방지특별법』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이력
  - ③ 『보험업감독규정』제 94 조의 2 제 7 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